

재류자격의 취득

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기가 일본에 재류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단, 60 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.

예: 외국인 부부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등

필요서류

각각의 재류자격과 재류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.

문의처

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고베지국

(고베시 주오구 가이간도리 29(神戸市 中央区 海岸通 29) 고베지방합동청사

078-391-6377